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4.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182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4.)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행정국장 : 정찬식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조례 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4조(통장의임기) 및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조항 삭제
  - ☞ 시행규칙 제정
- 제11조의3(통장신분증) 조례 일부 개정 및 삭제
  - ☞ 시행규칙 제정

- 제2조(통·반의 조직) : 기존 통·반 기준 확대
  - 1통(8개반 ⇒ 10개반) / 1반(40가구 ⇒ 60가구)
- 제10조(편의제공)
  - 상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통장 ⇒ 통·반장)
  - 감염병 발생 확산 방지 조치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 (1) 입법예고(2023. 5. 4. ~ 2023. 5.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안 제1조(목적) 중 “자조”라는 용어(한자어)의 명확화를 위해 “自助”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애씀)라는 한자를 나란히 적으려는 것임.
- 안 제2조(통·반의 조직)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제2항을 삭제 하고 제3항을 “통은 6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 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로 정비하려는 것임.
- 여기서 제2항 중 <삭제> 표기를 유지하려는 것은 시행규칙 제정의 근거 연혁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입법경제적 목적에 있음.

우리나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방식은 흡수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부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바, 자치법규의 조문에서도 개정연혁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조항 번호가 달라지면 일부개정조례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해당 부분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등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개정 연혁을 나타낼 필요성 및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연혁이 드러나도록 삭제된 조항을 삭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함.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조항에서 삭제되는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가 없고, 개정연혁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삭제된 조항 자리에 삭제되지 않는 기존 조항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법제처, 2022 : 394)

- 안 제4조(통장의 임기)와 안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은 삭제하고 <삭제> 표기를 유지하려는 것임.
- 안 제7조(임무)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제1항 중의 사항들로 정비하려는 것인데, 제5호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의 임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 새마을지도자강남구협의회, 강남구새마을부녀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통장이 새마을사업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선 동행정에 혼동을 줄 수 있을 것임.
- 특히, 안 제7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안 제2항의 규정사항임.

현행	개정안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직무를 <u>대행하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u>

- 생각하건대, 본 조항은 동 행정의 보조자인 통·반장의 임명과 활동을 마치 민법상의 가사 대리권의 법리로 접근하여 행정 편의적 규범화를 이룬 것으로 보임.

행정보조자인 통·반장은 공적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임명되는 것이고, 이는 통·반장 개인에 대한 임명임.

- 이를 유사한 맥락에서 보자면, 병가 중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공적 임무를 그의 부모나 배우자가 2개월이나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행정법리상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는 오히려 통·반장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sup>1)</sup>을 위반하는 조항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수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	수정안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직무를 대행하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해당 통과 인접한 통·반장 또는 주민 중에서 임시 통·반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7조의2(비밀유지)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반상회)는 참석대상을 유연하게 정비하였음. 안 제10조(편의 제공)은 신문 등 구독비용 및 사고 보상상해보험 가입 등 통·반장의 공적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편의 제공사항을 규정하여 그동안 미비한 점을 개선한 것이며,
  - 안 제11조의3(통장신분증)은 통장신분증 제시 및 신분증 관리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반장신분증 필요성은 없는 검토 및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타사항으로 주민자치과는 현재 <통·반장 활동지원>사업 예산이 3,811,640천원이고, 조례 개정으로 수반될 보험가입비 등의 비용추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발생 비용이 3억원 이하로 추정되어 미기재하였음.

1)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단체보험 가입이 3억원 이하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조례개정과 규칙시행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응답을 통한 수정할 사항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82호

제안일자 : 2023.6.14.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 1. 수정이유

일부 부적절한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 수정내용

- 통·반장 개인에 대한 임명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을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해당 통과 인접한 통·반장 또는 주민 중에서 임시 통·반장을 지명할 수 있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p> <p>1. 반장 또는 반원의 <u>지도</u></p> <p>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u>요망사항</u>의 보고</p> <p>3. (생략)</p> <p>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재난발생시 사건·사고 보고</p> <p>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p> <p>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p> <p>7. ~ 9. (생략)</p> <p><u>&lt;신설&gt;</u></p> <p>10. (생략)</p> <p>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임무) ① ----- ----- -----.</p> <p>1. ----- <u>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u></p> <p>2. ----- ----- <u>건의사항</u>----- -</p> <p>3. (현행과 같음)</p> <p>4. <u>통반 내 순찰과 수방, 제설, 위험시설물 등 주민 불편 사항 신고</u></p> <p><u>&lt;삭제&gt;</u></p> <p>6. <u>통·반원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u></p> <p>7. ~ 9. (현행과 같음)</p> <p>10. <u>재난·재해 등 사건·사고 보고</u></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p>② ----- ----- ----- <u>대행하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7조(임무) ① (개정안과 같음)</p> <p>1.~11.(개정안과 같음)</p> <p>② <u>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해당 통과 인접한 통·반장 또는 주민 중에서 임시 통·반장을 지명할 수 있다.</u></p>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조”를 “자조(自助)”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반은”을 “통은 6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하고 반은”으로, “40가구”를 “60가구”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도”를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요망사항”을 “건의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해당 통과 인접한 통·반장 또는 주민 중에서 임시 통·반장을 지명할 수 있다**”로 한다.

4. 통반 내 순찰과 수방, 제설, 위험시설물 등 주민 불편 사항 신고
6. 통·반원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10. 재난·재해 등 사건·사고 보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상가 지역의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장이”를 “통·반장의”로, “사과의”를 “사고”로,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한다.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직무 수행 시 필요한 동의 공부(公簿)의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및 잡지 등의 구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통·반장교육 등)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직무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 제1항 중 “통장은 통장 직무 수행 시 통장신분증을 지녀야”를 “통장신분증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통장은 통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통장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④ 통장신분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자조(自助)----- ----- ----- -----.</p>
<p>제2조(통·반의 조직) ① (생략) ② 1통은 6개반부터 8개반까지로 구성한다. ③ 반은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p>	<p>제2조(통·반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③ 통은 6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하고 반은 --- 60가구-----.</p>
<p>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새로 위촉된 통장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p>	<p>&lt;삭 제&gt;</p>
<p>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p>	<p>&lt;삭 제&gt;</p>

모집하며 통장선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위기,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행정처리상 동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⑤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또는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 4의2. 제9조에 따른 통·반장회의에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무단으로 5회 이상 지참하였을 때

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⑥ 동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장 또는 반장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해촉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주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동 행정예 관심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통장 공개모집 공고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생략)

제7조(임무) ① -----  
-----.

1. -----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2. ----- 건  
의사항-----
3. (현행과 같음)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재난발생시 사건·사고 보고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 9. (생략)

<신설>

10. (생략)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제8조(반사회) ① 반사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제10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4. 통반 내 순찰과 수방, 제설, 위험시설물 등 주민 불편 사항 신고

<삭제>

6. 통·반원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7. ~ 9. (현행과 같음)

10. 재난·재해 등 사건·사고 보고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해당 통과 인접한 통·반장 또는 주민 중에서 임시 통·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반사회) ① 반사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상가 지역의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편의제공)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직무 수행 시 필요한 동의 공부(公簿)의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및 잡지 등의 구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의2(통·반장교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통장신분증)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통장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통장은 통장 직무 수행 시 통장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② (생략)

③ 통장은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경우 통장신분증을 동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조선설 2016.07.08.>

③ ----- 통·반장의 -----  
----- 사고 -----  
----- 수 있으며,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의2(통·반장교육 등)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직무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통장신분증) ① -----  
----- 통장신분증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장은 통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통장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④ 통장신분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삭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2
----------	-----

제출년월일 : 2023. 6.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주민자치과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조례 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4조(통장의임기) 및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조항 삭제

☞ 시행규칙 제정

나. 제11조의3(통장신분증) 조례 일부 개정 및 삭제

☞ 시행규칙 제정

다. 제2조(통·반의 조직) : 기존 통·반 기준 확대

- 1통(8개반 ⇒ 10개반) / 1반(40가구 ⇒ 60가구)

라. 제10조(편의제공)

- 상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통장 ⇒ 통·반장)
- 감염병 발생 확산 방지 조치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3. 5. 4. ~ 2023. 5.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조”를 “자조(自助)”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반은”을 “통은 6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하고 반은”으로, “40가구”를 “60가구”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도”를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요망사항”을 “건의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4. 통반 내 순찰과 수방, 제설, 위험시설물 등 주민 불편 사항 신고
6. 통·반원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10. 재난·재해 등 사건·사고 보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상가 지역의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장이”를 “통·반장의”로, “사과의”를 “사고”로,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한다.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직무 수행 시 필요한 동의 공부(公簿)의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및 잡지 등의 구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통·반장교육 등)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직무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 제1항 중 “통장은 통장 직무 수행 시 통장신분증을 지녀야”를 “통장신분증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통장은 통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통장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④ 통장신분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	제1조(목적) ----- -----

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의 조직) ① (생략)

② 1통은 6개반부터 8개반까지로 구성한다.

③ 반은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새로 위촉된 통장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  
-----  
자조(自助)-----  
-----  
-----  
-----  
-----.

제2조(통·반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통은 6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하고 반은 --- 60가구-----  
-----.

<삭 제>

<삭 제>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모집하며 통장선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위기,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행정처리상 동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⑤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또는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의2. 제9조에 따른 통·반장회의에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무단으로 5회 이상 지참하였을 때

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⑥ 동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장 또는 반장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

해촉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주관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동 행정기관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통장 공개모집 공고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제7조(임무) ① -----  
-----.

1. ----- 지도 및 반상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생략)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재난발생시 사건·사고 보고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 9. (생략)

<신설>

10. (생략)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

회 운영 지도

2. -----  
--- 건의사항-----

3. (현행과 같음)

4. 통반 내 순찰과 수방, 제설, 위험시설물 등 주민 불편 사항 신고

<삭제>

6. 통·반원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7. ~ 9. (현행과 같음)

10. 재난·재해 등 사건·사고 보고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 대행하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표할 수

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제10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직무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  
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  
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  
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  
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의2(통·반장교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의 업무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상가 지역의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  
람 또는 건물관리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편의제공)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직무 수행 시 필  
요한 동의 공부(公簿)의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을 제  
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구  
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 정  
보 제공을 위한 신문 및 잡지  
등의 구독과 업무 수행에 필요  
한 물품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③ ----- 통·반장의 -----  
----- 사고 -----  
-----  
---- 수 있으며, 주민접촉을 통  
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제11조의2(통·반장교육 등) 구  
청장은 통·반장에게 직무 수행

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통장신분증)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통장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통장은 통장 직무 수행 시 통장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② (생략)

③ 통장은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경우 통장신분증을 동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16.07.08.>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통장신분증) ① -----

-----  
-----  
- 통장신분증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장은 통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통장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④ 통장신분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삭 제>

